

의령남씨종종묘역 (기념물 제60호)

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82-1

현상변경허용기준

범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봉	경사지봉 (3:10 이상)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지영보존 - 문화재 보존, 관리■ 위반 시설에 한해 이용 -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 	
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여부 신청 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. 	
그외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(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도록 함). 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구역(빗금진 1구역 제외)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을 따르되, 문화재의 경관보호■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기를 받도록 함.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견장 위험률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■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)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램프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도로, 교량,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■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	

■ SCALE : 1/2,000(A3)

0 25 50 100m

